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단5046839 판결 [사전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다모아피앤디

4. C

변론 종결 2016. 3. 31.

판결 선고 2016. 4.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77,448원과 그 중 92,114,018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화성시 D 공장용지 1942.1m²에 관하여,
 - 가.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2014. 10.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1588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다모아피앤디 사이에 2014. 10.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주식회사 다모아피앤디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같은 등기소 2014. 10. 20. 접수 제162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77,448원과 그 중 92,114,018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사이에,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1. 10. 27.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 1) 원고는, 피고 A가 2014. 10. 7.부터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3. 5.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에 기해 대출원리금 92,114,0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A가 납부를 지체한 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가 20,620원, 미납 보증료가 270,680원 남아 있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572,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

피고 A는 자신의 소유인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4. 10. 13.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4. 피고 C에게 주문 제2의 가.(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2014. 10. 20. 주식회사 다모아피앤디(이하 '피고 다모아피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2의 나.(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3억 3,052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기업은행에 대하여 2,522,553,150원, 외환은행에 대하여 3억 원, 국민은행에 대하여 7,700만 원, 우리은행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각 채무와 대한민국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3,984,43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5,408,240원 등 합계 3,428,945,82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① 원고와 피고 A, B, 다모아피앤디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②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청구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 등 채권의 합계 92,977,448원(= 대위변제금 92,114,018원 + 연체보증료 20,620원 + 추가보증료 270,680원 + 채권보전비용 572,1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2,114,01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3.

5.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다모아피앤디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4. 10. 13. 및 2014. 10. 20. 각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직전에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여 약 한 달 뒤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5. 2. 24.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해 위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A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수익자들인 피고 C, 다모아피앤디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C는 피고 A에게 2009. 4.경부터 2011. 7.경까지 설립자금 3억원 및 운영자금 2억 3,500만 원을 각 대여한 후, 2012. 4.경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황이나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인 2012. 4.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각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다모아피앤디는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다모아피앤디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주옥